

안산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8-608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1. 5. 18.
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제안이유

- 상위법인 「지방세법」 개정으로 주민세 세세목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「안산시 시세 징수 조례」에 반영하고자 함.

주요내용

- 주민세 세세목의 명칭을 변경함(제2조)
“재산분” → “사업소분”

개정조례안 : 붙임1

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2

관계법령발췌서 : 붙임3

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사항 없음

예산수반사항 : 해당사항 없음

-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: 붙임4

사전예고(결과) : 의견없음

- 입법예고 : 2021. 3. 12. ~ 2021. 4. 1. (20일간)

기타 참고사항

- 현행조례 : 붙임5
- 방침결정문 : 붙임6

< 붙임 1 >

안산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안산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중 “재산분”을 “사업소분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과		공정조세과
입 안 자	실·과장 직위·성명	공정조세과장 김복수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세정팀장 박성규
	담당자 성명·전화	김기숙 (행정 2198)

